

의안 검토 보고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3.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
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건요지 : 따 로 붙 임
4. 검토의견 : 따 로 붙 임

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6년 11월 일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예 순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 · 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06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담보를 제공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2항).
- 나. 법제처 표준안 기준에 부합되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함
(안 제1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7조, 제11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광역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하여 분할납부 신청시 담보를 제공하게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또한 법제처에서 정한
표준안대로 낫표, 띄어쓰기 등을 맞게 재정비 하려는 것임.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 안 제4조제2항에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안 제1조, 제4조제1항,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 제11조에서는 법제처의 표준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띄어쓰기, 낫표 등을 정비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 함.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시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준한 담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주민부담이 가중되던 담보제공 규정을 삭제하고, 낫표, 띄어쓰기 등 기타 사항은 법제처 표준안 기준에 부합되도록 관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 우리시 광역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의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